

부천시공업용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1998. 12. 21

나. 제안자 : 부천시장

다. 회부일자 : 1998. 12. 21

라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67회 부천시의회(정기회) 제15차 건설교통위원회(1998. 12. 24) 상정, 질의, 답변
- 제68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(1999. 1. 21) 토론
- 제68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(1999. 1. 25)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(제안설명자 :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장 이규석)

가. 제안이유

- 수자원공사의 원·정수 구입비 등의 상승(98. 평균 21.3%)으로 급수수익보다 총괄원가 비용이 98년도말 기준으로 92억원 정도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어 요금인상으로 부족되는 재원을 보충하여 적자 경영을 최소화 하고
- 환경부의 물 수요관리종합대책(97. 5월 지시사항)에 의거 수도요금을 2000년까지 100% 수준으로 현실화하기 위한 조치임.

나. 주요골자

- 업종별 인상내용 : 전용공업용 평균 15.4%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- 없음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○ 없음

나. 반대토론

○ 없음

5. 수정안의 요지

○ “별첨” 참조

6. 심사결과

○ 수정안 가결

7. 소수의견요지

○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음

부천시공업용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

의안번호	제 93 호
의결년월일	99. 1. 26 (제68회)

제출년월일 : 1999. 1. 25

제 출 자 : 건설교통위원장

수정이유

- 현시기는 IMF지원 경제위기에 처하여 온 시민이 전례없이 심각한 민생고를 겪고 있는 실정이나 부천시에서는 상수도사업의 적자를 상수도요금 인상으로만 해결하려고 하고 있어
- 상수도사업의 경영합리화와 과학적인 예산 관리를 촉구하는 한편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다소 줄이고자 함.

주요골자

- 공업용 수도요금 인상시기를 1999년 2월에서 1999년 7월로 연기하고자 부칙을 일부 개정

부천시공업용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

부천시공업용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안부칙 중 “1999년 2월”을 “1999년 7월”로 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	수정안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칙</p> <p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하되 <u>1998년 1월 1일 사용분부</u> <u>터</u> 적용한다.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칙</p> <p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하되 <u>1999년 2월 고지분부터</u> 적 용한다.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칙</p> <p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하되 <u>1999년 7월 고지분부터</u> 적 용한다.</p>